

1. 새로운 제8장(중소기업)은 다음과 같이 추가된다.

" 제8장
중소기업

제8.1조
정의

이 장의 목적상,

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또는 HS란 양 당사국이 각국의 국내법에서 채택하여 시행하는 통일
상품명 및 부호체계와 그 일반규칙 및 법적 주석을 말한다. 그리고

중소기업이란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을 말한다.

제8.2조
일반 규정

1.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.

가. 양자 간 무역 및 투자 관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, 그리고

나. 이 협정에 중소기업에 특히 유익한 규정을 두는 것의 중요성

2. 양 당사국은 다음을 증진하고자 하는 약속을 확인한다.

가. 중소기업의 발전, 성장 및 경쟁력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환경

- 나. 중소기업에서의 고용 창출을 증진하는 환경, 그리고
 - 다. 중소기업이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환경
3.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활동의 중요성과 적절한 경우, 그 포럼의 조사결과 및 권고를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정한다.
4.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.
- 가. 중소기업의 국제 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확인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것의 유익함
 - 나. 새로운 법 및 규정을 제정할 때 중소기업의 필요를 고려하는 것의 유익함
 - 다. 세계화의 동향 및 그것이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의 유익함, 그리고
 - 라.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접근 및 혁신 지원과 관련된 문제를 검토하는 것의 유익함

제8.3조

정보 공유

1. 각 당사국은 다음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는, 대중이 접근 가능한 웹사이트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.
- 가. 이 협정의 전문
 - 나. 이 협정의 요약, 그리고

다. 다음을 담고 있는, 중소기업을 위하여 만들어진 정보

1)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설명, 그리고

2)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추가적인 정보

2.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자국의 웹사이트에 다음에 대한 링크를 포함한다.

가. 다른 쪽 당사국의 동등한 웹사이트, 그리고

나. 당사국이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무역, 투자 또는 사업을 하는 데 관심이 있는 중소기업에 유용하다고 여기는 정보를 제공하는 자국의 정부 당국 및 그 밖의 적절한 단체의 웹사이트

3. 제2항나호에 기술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관세법, 규정, 절차 및 문의처

나. 지식재산권에 관한 법, 규정 및 절차

다. 수입 및 수출과 관련된 기술규정, 표준, 적합성 평가절차와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

라. 외국인 투자자에 관련된 법과 규정

마. 사업자 등록 절차

바. 고용법과 규정

사. 조세 정보

아. 무역 진흥 프로그램

자. 제7-다장(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)에 정의된 기업인의 입국 및 일시 체류와 관련된 정보, 또는

차. 제9장(정부조달)의 적용범위 내에서 정부조달 기회

4. 각 당사국은 자국 시장 접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, 가능한 경우 HS 코드 등으로 전자 검색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링크를 제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에 포함한다.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.

가.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적용하는 관세율

나. 최혜국 실행 관세율

다. 당사국이 설정한 관세율 할당

라. 원산지 규정, 또는

마. 당사국이 결정하는 그 밖의 관련 조치

5.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웹사이트상의 정보 및 링크가 최신이고 정확함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러한 정보와 링크를 정기적으로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한다.

6. 한쪽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다른 쪽 당사국의 웹사이트에 포함할 추가 정보를 권고할 수 있다. 다른 쪽 당사국은 그러한 권고를 긍정적으로 고려한다.

7.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이 제공하는 기회로부터 혜택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에 제1항에 언급된 자국의 웹사이트를 홍보한다. 이러한 홍보는 다음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.

- 가. 그 밖의 관련된 정부 웹사이트에 자국 웹사이트 링크를 제공
- 나. 중소기업 지원 또는 교육 프로그램
- 다. 기업 대표 단체와의 협력
- 라. 이 장에 따라 수행되는 협력 활동, 또는
- 마. 당사국이 적절하고 효과적이라고 여기는 그 밖의 모든 수단

제8.4조

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협력

1.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국제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을 축소하기 위하여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한다.
2. 양 당사국은 중소기업의 무역 및 투자 기회를 증대하기 위하여 다음 등으로 협력할 수 있다.
 - 가. 중소기업이 이 협정에 따른 상업적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방법을 확인한다.
 - 나. 다음의 이용을 포함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돕는 것에 대한 각 당사국의 경험 및 우수 관행을 교환하고 논의한다.
 - 1) 훈련 프로그램
 - 2) 무역 교육
 - 3) 무역금융

- 4) 다른 쪽 당사국 내 상업적 파트너를 확인하는 정보
- 5) 중소기업이 우수한 환경 관행 및 기술을 채택하거나 유지하도록 장려
- 6) 우수 비즈니스 인증 확립에 관한 정보
- 7) 다른 쪽 당사국 시장의 보험, 조세 및 지급 관행에 관한 정보, 또는
- 8)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시장 여건에 적응하도록 조력

다. 중소기업이 세계 시장 및 공급망에 참여하고 효과적으로 통합되도록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촉진

라. 중소기업의 무역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장벽을 확인하고, 그러한 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 고려

마. 중소기업이 디지털 무역에 참여하고 이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기회를 활용하도록 지원

바. 여성, 청년, 장애인 및 소수집단을 포함한 과소대표 집단이 소유한 중소기업의 국제무역에 대한 참여 증진, 또는

사. 이 협정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능력에 관하여 그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포함한, 중소기업과 관련된 그 밖의 모든 사안 검토

3. 양 당사국은 제2항에 따른 활동을 수행할 때, 적절한 경우 전문가, 국제 기구 또는 민간 부문과 협력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고려한다.

4. 양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발생했거나 발생할 협력 활동의 개요를 서술하는 공동성명에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다.

제8.5조

중소기업에 유익한 그 밖의 규정

양 당사국은 이 장에 더하여 이 협정에는 중소기업 문제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협력을 증진하고자 하는, 또는 중소기업에 유익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한다.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.

- 가. 제7-바장(디지털무역)
- 나. 제9장(정부조달)
- 다. 제11-가장(혁신)
- 라. 제11-다장(모범규제관행)
- 마. 제12-가장(반부패)
- 바. 제13-가장(무역과 양성평등)

제8.6조

접촉선

1. 각 당사국은 중소기업에 대한 접촉선을 지정하고 이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.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.
2. 접촉선은 양 당사국이 결정한 경로를 통하여 의사소통한다.
3. 접촉선은

- 가. 당사국이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여기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의사소통을 촉진한다.
- 나. 중소기업과 관련된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점검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를 교환한다. 그리고
- 다. 적절한 경우, 이 장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양 당사국과 이 협정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, 작업반 또는 그 밖의 부속기구 간 조정을 촉진한다.

제8.7조 분쟁해결의 비적용

어떠한 당사국도 이 장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도 제14장(분쟁해결)을 이용할 수 없다."